##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이정문·조승래·어기구

이연희 • 문진석 • 임호선

이학영 • 이개호 • 민형배

강훈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 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위 ('20년 충남 역외 유출 규모 23조원)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동일인 및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 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34"로 하고,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지방은행의 경우 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34"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지방은행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유지한 지방은행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생         |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현행과  |  |  |
| 략)                        | 같음)                  |  |  |
|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          | ②                    |  |  |
| 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                      |  |  |
|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
|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 1                    |  |  |
| 것. <u>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u>   | <u>&lt;단서 삭제&gt;</u> |  |  |
| 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                      |  |  |
| <u>있다.</u>                |                      |  |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  |  |
|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          | <u> 등</u> ) ①        |  |  |
|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  |
| 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         |                      |  |  |
| 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        |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         |                      |  |  |
| 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u>.</u>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         | 2                    |  |  |
| 행주식 총수의 <u>100분의 15</u> 이 | <u>100분의 34</u>      |  |  |

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 (생 략)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 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 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 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 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 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 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 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⑨ (생 략)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 저 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 ② (현행과 같음)        |
|-------------------|
| ③                 |
| <u>다음</u>         |
| 각 호(지방은행의 경우 제2호ㆍ |
| 제3호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           |
| 1. ~ 3. (현행과 같음)  |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세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 |
| 보유제한 등) ①         |
|                   |

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없다.